

(별지 1)  
 서계회계호  
 단기4291년5월21일  
 서울특별시정서정

시의회  
 의강 박 명 준 귀하  
 재산취득에 관한건  
 수계의건 독립문및 도림국민학교 교지및 건물에 별지와 如히 매수목적하오니 의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요청합니다.

1. 재산의 표시

남대문 원적동	46의71	대	221평	15,000	331,500환	
"	"	목와평	14	69,330	970,620	
"	46의72	대	13	16,670	216,710	
"	"	가 건	7	11,670	81,690	
"	46의74	대	16.7	17,670	295,089	
"	46의75	"	13.2	15,000	198,000	
"	"	목와평	7	69,330	485,310	
"	46의76	대	13.7	21,330	292,221	
"	"	목와평	3	70,830	212,490	
"	"	"	8.5	39,170	332,945	
"	46의79	대	34	15,000	510,000	
"	"	연와평	17	96,330	163,761	
"	"	대	20.4	15,000	306,000	
"	"	목와평	13	85,370	1,109,810	

"	46외84	대	19.8	15,000	297,000	
"	46외88	"	20.1	15,000	301,500	
"	"	목와평	13.5	77,000	1,039,500	
"	46외89	대	18	15,000	270,000	
"	46외90	대	30.9	15,000	463,500	
"	"	가 건	9.5	15,000	142,500	
"	46외91	대	17	15,000	255,000	
"	"	목와평	13	81,000	1,063,790	
"	46외93	대	18	15,000	270,000	
"	"	목와평	13	69,330	901,290	
"	46외94	대	20.1	15,000	301,500	
"	"	목와평	12.7	79,330	1,007,491	
"	46외96	대	16	15,000	240,000	
"	"	목와평	7.5	69,330	519,975	
"	46외228	대	24.5	20,670	506,415	
"	"	목와평	12	83,330	999,960	
"	46외95	대	11	15,000	165,000	
"	46외942	"	23.5	15,000	352,500	
"	46외233	"	58	15,000	87,000	
"	46외235	"	10	25,330	23,300	
"	46외1410	"	7.1	18,330	130,143	
계		대 건	374.9 150.7		150,335,208	트 6,001,963 건 9,031,547

영등포구인길동	288의1	대	200평	2,670	5,534,000
"	288의2	건	1,802평	2,500	4,505,000
"	289	"	456평	2,270	1,035,120
"	299	"	534평	2,170	1,188,780
"	287	"	586평	2,270	1,330,220
"	300	"	1,131평	2,100	2,375,100
"	286	"	1,032평	2,170	2,239,440
"	285	"	160평	2,100	336,000
"	301의1	"	684평	2,100	1,435,400
"	288의1	목야평	2,775평	25,000	693,750
"	"	목 평	16평	3,920	62,720
계		토 건	6,585평		1,4950,060
			4,375평		736,470

사외회 회  
단기4291년5월21일

서울특별시정 회 정

사외회

의정 박명준 귀하

동사무소대지및건물 매수에관한건

수제의건 동대문구 제기제1동 건능제2동 승인동 사무소대지와 신설동및 용산구삼원동사무소대지및건물용별지와이하 매수요청하오니 사외회에 부의하  
여 주심을 요청합니다.

1. 계산표시

계 산 위 계	종 별	매 수	결 정 가 격		비 고
			단 가	액	
남대문구 제기동 98의2	담	567평중60평	10,330	619,800	제기동사무소
"	대	100	9,330	933,000	건능동2동사무소
"	대	61	15,670	955,870	송인동사무소
"	대	28	30,000	840,000	신철동사무소
"	대	16	49,000	784,000	신철동사무소
"	대	15	45,670	685,000	신철동사무소
용산구 원효로4가 16	대	10	8,670	86,700	심원동사무소
"	대	7	6,670	46,690	심원동사무소
계	전	259		4951,110	토 3,435,370 건 1,515,740

2. 매수하려는 이유

1. 제기동사무소는 개인토지상에 건축하였으며 건능동2동사무소는 창도국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前記 대지를 매수하려하며,
2. 신철동사무소는 사무소건물이 없는 관계로 개인건물을 임차 사용중이므로 본계산을 매수코저하며
3. 심원동사무소는 건물이외에 대지가 없으므로 본대지를 매수코저함.

세계회계포  
단기4291년5월19일  
서울특별시경희경  
(별잔3)  
시의회  
의장 박명준 귀하

시유건물 철거처분에관한건  
수계의건 시교육위원회관하 창덕여자고등학교 기교사로 사용중인 별거목록의재산은 심히 노후하여 이를 철거처분교적하오니 시의회에 부의하여주신  
을 바랍니다.

1. 재산표지

-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35번지  
목조외종관장단층건기교사(원기숙사) 건평 58평
- 외목조외종관장단층기교사(원기숙사) 건평 126평5합
- 외목조외종관소1동 건평 6평
- 외목조외도당하1동 건평 4평5합
- 외목조외도당하1동 건평 1평5합

2. 철거하려는이유

건기재산은 단기4243년8월 건축한이래 창덕여자고등학교 기교사로 사용하는 재산인바 교실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기교사로 개수사용중이나 심히 노  
후하여 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처분교적함.

(별잔4)

세계회계 897호

단기4291년5월28일  
서울특별시경희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명준 귀하

가교사건물처분에관한건  
도제의건 별지표시의 용산중학교 가교사로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처분코자하오니 시의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요청합니다.

1. 재산의 표시

용산구용산동2가1번지

右지상 목조외동2층건가교사(원기숙사) 건평 180평 외2층평 170평

2. 철거처분하려는이유

건기 재산은 용산중학교 가교사로 사용중인바 원래는 동교 기숙사이던것을 교실부족으로 개수사용(사면중대파)하였어오나 노후일로에있고 운동장이 협소하여 이를 철거확장코자함.

(별건6)

(1) 지방의회운영에관한건

내지 제249호

(사본) 단기4291년2월28일

내 무 부 차 관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귀하

지방의회운영에관한건

지방의회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누차 지시 또는 통침한바있으나 건년도의 년간업적을 검토한바에 의하면 회기운영이나 의회비경리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두를 벗어나지못한 영향이 不無하오니 앞으로는 左記 各항에 더욱 주력하여 의회운영에 개인을 기하도록 선처하시말.

進 記 단기4290년도의 특별시 도의회 운영상황별표와 加하오니 참고에 자하시말기 청심함.

1. 회기운영에 있어서 회의일수가 부족하게될 우려가 올때에는 미리 회의시간을 연장하는등 방법강구하여 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

2. 회기진행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의의하여 법정회의 일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할것.

3. 의회비는 당초예산에 의하여 기별집행계획을 세워 그 범위내에서 경리하고 년도도중에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의원집대와 시참여행동을 강력 억제하여 경비의 절감을 기할것.

1. 특별시 도의회의회 일수표

구분	본회의	도정감사	출납감사	합계	비고
서울	73	15	26	114	
경기	61	4	25	90	
충북	58	8	7	73	
충남	56	14	13	83	
전북					
전남	56	18	16	90	
경북					
경남	52	24	14	90	
강원	45	28	10	73	

2. 특별시도의회비예산예표

구분	계급호	역비	관공비	수용비	합계	비고
	(의원1인당)	( " )	( " )	( " )	( " )	
서울 47	16,391,561 (348,600)	1,410,000 (30,000)	23,300,000 (466,800)	34,715,900 (738,600)	75,817,462 (1,613,000)	
경기 45	11,662,500 (259,200)	12,320,000 (273,800)	9,926,000 (220,400)	11,022,400 (244,900)	44,930,900 (996,300)	
충북 80	4,996,080 (166,500)	3,212,400 (107,000)	2,581,200 (86,000)	4,911,680 (173,700)	15,699,740 (523,200)	

구분	계급호 (의원1인당)	역비 ( " )	관공비 ( " )	수용비 ( " )	합계 ( " )	비고
총복 45	8,515,200 (189,200)	5,070,000 (112,800)	7,910,800 (175,700)	9,866,900 (219,200)	31,362,800 (696,700)	
전복 44	12,302,500 (279,600)	10,146,000 (220,500)	11,000,000 (230,000)	9,679,800 (219,900)	43,128,300 (980,000)	
전남 58	14,011,000 (241,500)	11,043,000 (190,300)	5,490,000 (94,600)	12,309,400 (32,200)	42,851,400 (738,600)	
경북 61	14,235,500 (233,400)	7,410,500 (121,500)	5,600,000 (90,200)	7,566,900 (124,000)	34,712,900 (569,100)	
경남 67	13,646,800 (203,700)	8,335,400 (124,700)	9,418,500 (140,500)	8,367,000 (124,800)	39,769,700 (593,700)	
강원 25	4,876,000 (195,000)	4,485,000 (179,400)	5,305,000 (32,200)	3,952,000 (158,100)	18,618,000 (744,700)	

3. 감사실시상황표

구분	시	회수	경		감사 경인원	출	납	감		합	비고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서울	1	15	45	655	1	26	21	546	2	41	1,221
경기	1	4	45	180	2	25	45	1,125	3	29	1,305
충북	1	8	30	240	1	7	30	210	2	15	450
전남	1	14	43	602	1	13	43	559	2	27	1,151
전북	2	46	44	2,024	2	47	13	611	4	93	2,635
전남	2	18	58	1,044	1	16	58	928	3	34	1,972
경북	2	22	59	1,298	1	3	12	36	3	25	1,334
경남	2	24	67	1,608	2	14	67	938	4	38	2,546
강원	2	10	23	398	2	10	8	75	4	28	433
		8	16			7					



2. 내부부사무감사저적사항

1. 지방의회운영에관하여

1. 단기4290년의 년간회의일수를 계산하건데 12월의 정기회의이전에 이미 104일을 소비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일수를 무시한 것으로서 심회 유감으로 사료하는바이며 이 회의일수의 남비의 경위를 살피건대 회의시마다 법령상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무제한하고 상정토의한 소치로서의 사건해를 탈선이라 아니할수없으나 이후는 특히 법정회의일수를 엄수하도록 각별유의할 것. 2. 임시회는 특별회의이므로 특히 긴급한 사유가 아니던 소집하지않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회의를 소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최일7일전까지에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 개개가 이를 무시하고 소집되었음은 위법이며 乃一상정상상의 긴급사건이 아닌것에 대하여 긴급의 이유로 서법정기일을 앞두지않고 소집할 의회는 제적의원 회원이 출석하지 않은 한 그 의결이 무효로 되는 것이니 이후 주의할 것.

3. 또한 임시회는 특정의안 즉 임시회소집목적에 된 인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이니 먼저 당해안건을 처리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의안을 심의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추가경정을 위하여 시정의 요구로 소집된 제9회임시회(4290년4월10일소집)에서는 그 의회소집목적이 된 예산추가경정안을 의결하지않고 의원발안의 다른 의제를 처리하다가 마침내 예산추가경정안을 폐회중 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제14임시회(4290년5월15일소집)에 이월의결하였음은 임시회의 성격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아니라 1의사1의안원칙에도 위반되는 의회진행방법이니 이후如斯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4.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의하면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전의 권위로 인하여 선거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 규정한 바 의장 또는 부의장은 합의계 기관이 아니니만치 설명 전임자의 임기 만료전의 권위에 의한 선거라할지라도 그는 보궐선거가 아니므로 그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으로 되는 것이니 착오가 없도록 할 것.

5. 4289년9월의 임시회에서 당해임시회 소집목적에된 의제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검수건의원의 4인의 긴급동의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바 질문은 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하여 의원 10인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니 이후 상기와 같은 위식의 질문이 없도록 할것이며 또 질문은 직접 의제와 관련이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회에서 질문을 실시하지 않을것이 원칙이니 이를 유의할 것.

6. 4290년2월25일 소집된 제8회임시회에서는 3월18일부터 3주간 의회의 폐회중 출납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3월18일부터 24일간 출납감사를 실시한 바 상정상 의회의 폐회중에는 출납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니 지방으로 이 출납감사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은 그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합법적으로 조정할 성력을 다하지않고, 폐회중에 출납감사를 사전예비검사로 간주한다는 취지로서 그에 응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를 변용하여 오직 무사주의만을 취하는 태도라고 아니할수없으니 금후如斯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7. 429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상황을 보건대 시장은 정기회초에 제출하여야할 예산안을 12월8일에 이르러 제출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그 심의를 태만하여 회기완료까지는 12월30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므로 다시 시장은 가예산을 제출하여 의결하게하고 본예산은 익년1월에 임시회를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할것이라고 집행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의외적인 태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기와같은 가예산은 사실상의 가예산은 될수 없는 것이니 이후如斯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의회비부당지출에관하여

일반회계 회의비 특별관공비에서 4289년10월31일부터 4290년11월21일까지 14개월에 亻하여 하위사류를 각성미치하고 27034380환을 부정지출하여 其中 원천과세 286451환과 과감비 165,929환을 공제한 26,582,000환을 시의원 47명에 對 25,000환내지 40,000환씩 (특별지출포함) 지출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일기변상조례에 위반되는 부당처사이니 향후 여사한 사례가 절무도록 각별주의할 것.

3. 회계사무의적정관리에관하여

7. 단기4290년도 시의원에 대한 일당지부상황을 보전대 11월7일현재로 총 3,554,500환이 지번되어 있는데 1월이후10월말일까지에 亻 108의원이 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인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54,000환을 과불하였음은 시의원비용변상조례에 위배되는 부당지출로서 유감된 일이니 과불금을 즉시 회수하여 당해조치할 것.

1. 의원일당 지급상황

지출년월일	지출액	출석		비고
		인원	일수	
4290년 1월25일	587,500	47명	25일	
4290년 6월5일	622,500	"	27일	
4290년7월6일	584,500	"	25일	
4290년9월7일	587,500	"	"	
4290년10월7일	587,500	"	"	
4290년11월7일	585,500	"	"	
계	3,554,500			

2. 의원결석일수조사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계	비 고
1월	1	3	3	19	2	1	1	1	2	33	결석정인원은 108명 108 500원-54,000원(과비용)
2월	1	4	1							6	
3월											
4월	3	5								8	
5월		1		2	3	3	2			11	
6월		2	1	4	2			3		12	
7월	2	2	3		1		1			9	
8월	1	1	2		1					4	
9월	3	2	2	1	2					11	
10월	1	4	3	6						14	
계	12	25	15	32	10	4	4	4	2	108	

3. 상계감사지적사항

삼리시  
 건명 경비부담지출예관환건  
 삼리사항  
 단기4290년12월2일  
 상계민상계제2주제1과장  
 감사관 신 관 섭 인  
 서울특별시계부국  
 지분명령자 재무국장 서기관 장 병 인  
 회계과장 사무관 오 대 원

시정과장사무관 신용석 귀하  
지출원 주사 황규진  
左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구함

記

단기4290년도 일반회계세출

款 의회비(항) 특별관공비(목) 특별관공비에서 동년3월6일부터 금년5월7일까지 사이에 3회에 扠하여 별지와 扠히 시행조사연구회 회계감사및시유계산처리에 대한 교통비및야식대 명목으로 시의원 김건용외 46명에 扠 30,000원 내지 40,000원씩 扠계 금 5,09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바,

1. 본건 지불할 수 있는 법적근거
2. 지방자치법 제16조및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비용보상조례에 扠하여 시의원에 扠하여는 일비와 扠비 이외에는 본건과 扠한 각목으로 현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扠견역하
3. 본건 금후처리대책 扠하

상리사

건명 의원일당부당지출에 扠한건

상리사항

단기4290년12월2일

상의원상계제2목제1과

감사관 신관섭 인

서울특별시

시과장(사무관) 신용석

지출원(주사) 이영경 귀하

右記사항에 扠하여 扠변을 구함

단기4288년도 시비 일반회계(관) 의회비(항) 시의회비(목) 계금역에서 단기4289년11월12월분 시의원 김재광외 25명에 扠 일당지출에 扠어서 시의회의중에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24,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扠하여

1. 시의회의중 결근의원에 扠 일당(500원씩)을 지출한 사유

상리서

건명 허위증빙서작성에관한건

단기4290년12월2일

삼계원상계제2주제1과장

검사관 신관섭 인

서울특별시

내무국장 이사관 김상화

재무국장 서기관 장병인

시정과장 사무관 신용석

회계과장 사무관 오대원 귀하

지출원 주사 황규건

左記사항에대하여 답변을구함

문

단기4290년도 일반회계 세출(관) 의회비(항) 특별관공비(목) 특별관공비에에서 동년1월25일부터 금년11월8일까지 사이에 13회에 トラ하여 시의원에 대한 중식대 또는 총의회비를 서울특별시 구내식당 이종일에게 지출한 것같이 허위증빙서를 작성하고 합계 금 9,360,000원을 지출하여 시의원 김진용 외 46명에게 매월 20,000원내거로 30,000원씩 합계 금90,750원을 원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285,000원은 허위증빙서 작성에 수반한 인건과세액 및 회의회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바,

1. 조건 허위증빙서를 작성하여 시금고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유
2.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의회의인비비용변상조례에 의하여 시의원에 대하여는 일비와 여비 이외에는 본건과 如한 명목으로도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불하여 본건지금은 부당할 처사로 인정되는대 귀견여하?
4. 본건에 관여된 책임자 직성명여하?
5. 잔액 285,000원에 대한 사용내역및동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제1장 개론

의회의 감사보고는 결산보고에 대한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선언이고 이것이 가치법에 규정된 142조의 감사 의무와 144조의 결산승인의 절차상에 중요 의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이 충실화 실행하느냐 인하는다는 사실 결산에 나타난다.

결산은 집행부의 실제적인 결과임으로 시계정감독의 자료로서 의회에 제출케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결산은 집행부의 예산실행의 결과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다.

즉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재무행정의 담당자인 집행부를 감독하는 임원주의적경직기술회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하여 예산의 시행이 끝나면 고유의 재무행정은 또다시 시행정진반에 옮겨게되며 결산이라는 형태로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비로서 재무행정을 기정의 사실로 만드름은 물론이요 지방자치법 144조에 의하여 시정은 재정상의 책임을 해제되는 것은 주 권술한 바도 있거니와 이는 반드시 회계감사기관인 의회의 감사를 거쳐야만하는 의의가 이에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예산규모세입 10,401,721,800원 서울동예에 대한 90년12월31일 현재 예산원액집행상황을 감사한바 개요 아래와 같다.

### 1. 세 입 부

#### 1. 시세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대동인 시세의 세입예산예에 대한 수납률은 전년도에 78%에 비하여 약간 불량한 67%를 실현하고 있음은 의연히 경제회황상의 격동에 따르는 다수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 파세기본결정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징수결정후에 세액의 감면 수납의 지연을 게재하며 특히 미수납액이 누적되어 부득이 결산처분을 하게하였고 징수결정된 시세를 사실을 요구하여 결산처분한 것이 허다하여 불납결산액이 세입예산액의 68%에 해당하며 결산처분액과 감면처분액이 많음은 파세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지못한 소치로서 파세기본 즉 세입조사에 철저와 정세강행이 요청되는바다.

#### 2. 사용자 수수료에 대하여

세외수입으로서 서울특별시재정의 수위를 정하는 것은 사용자수수료인바 그 수입율은 과년도 29%에 비하여 약간 호전된 34%를 실현하고 있으나 본수입원은 중요시유재산인 각별인시장전물 장제장 운동장및부대시설 도축장 공인 등등인바 수납률의 구불량은 운영의 효율과 당무자의 신의관리를 결한 관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또한 그 세입예산책정 자체가 가공적인 것을 인정아니할 수 없으며,

#### 3. 재산수입에 대하여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의회발족이데 시정감사 또는 본회의석상에서 누척에 표하여 그 부실 부정을 지적하고 시정과 정확한 판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방대한 사유의 대지료의 다액미납으로 인하여 재산수입에 결함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광대한 사유지를 무단 불법사용하는자 허다함을 당무자는 지실할뿐더러 의당 재정수입